

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91,378,219	23,741,347
일반회계	708,011,368	21,240,341
특별회계	83,366,851	2,501,006
공기업특별회계	41,813,722	1,254,412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41,813,722	1,254,412
기타특별회계	41,553,129	1,246,594
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	24,909,832	747,295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10,490,189	314,706
농공지구조성사업	4,088,933	122,668
의료급여기금운영	1,347,241	40,417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716,934	21,508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 명세" 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4,043,974천원, 재해·재난 목적 예비비는 4,460,502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,741,347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하고, 미집행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하며, 이는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.